

#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 주 한 의원)

의안 번호	438
----------	-----

발의연월일: 2023. 3. 31.

발 의 자: 이주한·김종일·오연환  
백일권·이금태 의원

##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다. 걷기 활성화 사업(안 제5조)
- 라.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안 제6조)
- 마. 기록·관리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3. 제정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9조, 제26조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대구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구의 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주민 참여 지원 방안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2.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3.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포장되지 아니한 길로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체 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
  2. 문화상품권, 은누리상품권, 지역화폐
  3. 기프트콘 등 모바일상품권
-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록·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